

# 동물 진료보조 전문직의 직위설정에 관한 고찰

원문 : 일본수의사회지 2006년 6월호  
저자 : 오오모리 일본수의사회 전무이사  
역자 : 김병성 대한수의사회 고문

## 1. 현황과 과제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역량에 따라서, 또한, 동물사육자로부터의 다양한 요망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동물의료기술의 고도화, 진료과목의 전문분류화, 진료제공형태의 다양화가 진행되어가고 있다.

이와같은 환경하에 특히, 소동물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홀로 수의사만에 의하는 동물진료는 곤란한 실정에 있음으로 수의사와 함께 진료시설의 운영사무를 포함하여 동물진료를 보조하는 전문직담당자(스텝)와의 역할분담에 의하는 공동작업에 의하여 동물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현재 소동물 진료시설의 대부분(9할정도)은, VT, 동물간호사(이하 AHT)라고 호칭하는 자가, 고용되어

- (1) 수의사가 행하는 진료의 보조나 검사업무 이외에
- (2) 입원동물의 사양관리
- (3) 진료시설의 창구업무
- (4) 동물의 트리밍(다듬질이나 손질) 등의 미용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와같이, AHT가 동물의료에 있어서 독자적인 직업분야로서 정착되어 가고있는 상황하에서

- (1) AHT의 양성코스를 가지고 있는 양성시설이, 학교법인등에 의하는 운영형태의 전문학교가 60개 학교 정도, 대학 2개학교, 단기대학 1개 학교 이외에도, 무인가시설을 포함시킨면 80개 학교 이상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 (2) 양성코스의 수료자를 대상으로 AHT의 기술인정을 하여주고 있는 민간조직이 5개 단체(

사단법인 일본동물병원복지협회, 일본동물 간호학회, 일본소동물수의사회, 전일본수의사협동조합, 일본동물위생간호사협회)가 존재하여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AHT의 인정서를 발행하여 주고 있다.

현재 AHT양성코스의 수료자는 매년 2,000명이상 진료시설에서 근무하는 AHT라고 호칭하는 자는 20,000명 정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AHT는 이미 수의사의 전담관리업무로 되어있는 동물진료에 있어서, 진료의 보조행위를 위시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동물의료 관련업무를 통하여 수의사와 함께 동물의료를 담당하는 입장에 놓여있으며, 또한 이러한 현실이 동물사육자에 대한 적절한 동물의료의 제공을 도모하는데 불가결한 존재로 되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체의 의료에 있어서의 간호사등의 의료전문직과 같은 법령에 의한 업무의 범위나 업무에 관한 금지행위조차 규정되어져 있지 않다.

또한, 자격제도에 놓여져 있지 않은 것도 있어서, 기술·지식수준은 구구하며, 질적인 면이 보증되어진 인재의 안정적 확보가 불안정스럽다. 또한 받아들이는 측의 고용환경도 정비되어져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와같은 현상상황을 시인하여가면서 비즈니스 찬스에 맡긴채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는 것은 동물의료의 질적향상에는 연계되지 못한다.

또한 동물진료제공의 책임분담, 동물진료 과실등의 진료트러블에의 대처를 도모하는데에도 수의사 및 동물사육자의 쌍방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상황은, 그 나름대로 허용범위를 넘어서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리고 AHT 자체적으로 보아서도 직면환경의 정비를 도모한다는 면으로 볼 때 저해요인으로 된다고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 2. 일본수의사회의 검토 경위와 대응내용

일본수의사회에서는 동물 및 동물사육자에 대하여 적절한 동물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동물진료를 보조하는 자(이하 '동물진료보조자')를 동물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직으로 정하여 건전한 육성을 도모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서서 수의사의 전관인 사육동물의 진료업무와 동물진료보조자가 담당하는 진료의 보조업무에 관계되는 법령의 정비와 함께 동물진료보조자의 직면환경 정비의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를 시작하여 2003년 4월 '동물진료에 있어서의 동물간호사의 위치'를 정리하여 농림수산성을 비롯하여 동물의료단체 등에 다음 사항을 제안하였다.

- (1) AHT를 동물진료보조자로 직위를 확정시켜서 그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

(2) 수의사의 업무독점으로 되는 진료행위와 동물진료보조자가 담당하는 진료보조 행위의 법령상의 관계를 정리한 다음 동물의료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동물진료보조자에 관계되는 전국통일의 자격제도의 창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겸하여 수의과대학에서의 동물임상실습에서 수의사지도교원의 직접적인 지도·감독하에서 수의과대학생에게 일정수준의 기초적인 진료행위를 수행할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

(3) AHT 양성시설에 관하여 자격제도의 창설의 검토에 맞추어서 커리큘럼, 시설·설비, 교원 배치 등의 요건에 대한 기준의 제정을 포함하여 양성환경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 금년 3월에 쓰꾸바시에서 개최한 일본수의사회의 3학회 년차대회에서는 AHT인정에 관계하는 민간 5개 단체와 AHT의 대표자를 초청하여 'AHT의 인정 현황과 금후의 직위확립에 관하여'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는바, 각 단체 모두가 일본수의사회 관여하에서 금후 자격의 전국통일화를 추진한다는 방향에서 협의·검토를 추진한다는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AHT, 길들이기, 훈련, 트리밍 등의 동물관계 전문기술자의 양성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전수학교 등이 상호협력하여 교육내용을 정비하고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동물전문학교협회가 4월에 설립되어져 금후 전국전수학교 각종학교총연합회의 직역관계단체로서의 인가를 취득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수의사법 및 수의료법을 소관하는 농림수산성은 앞서의 소동물수의료에 관한 검토회보고(2005년 7월)에서 결정한 대로 소동물의료에 있어서의 동물진료보조자가 담당하는 역할에 일정한 이해를 표면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안정화된 직업으로서 자리잡게하기에는 동물진료보조자에 관련하는 단체, 수의사회등의 민간단체에 있어서의 평준화를 향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이며 자격제도에 관해서는 시기상조라 하여 수의사의 진료행위와 동물의료보조자가 담당하는 진료보조행위의 법령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어쨌든 동물진료보조자에 관해서는 그가 담당해야하는 업무의 동물의료에 있어서의 직위 결정문제를 좁은 범위의 사항으로 판단하여 현행의 관계법령의 틀안에서 운용하여도 족하다고 보던가, 또는 이기회에 새로운 법정비를 할 것으로 시야를 넓혀서 대처할 것인가, 이 문제의 선결없이 는 단 일보도 앞으로 나갈수 없는 단계에 와있다.

일본수의사회는 현 상황하에서 동물진료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의 AHT자체를 포함하여 지방수의사회, AHT의 양성 및 인정에 관여하고 있는 각 단체, 관계자의 의식통일과 관계자·단체의 전국조직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앞에 기술한 제언의 실현을 향하여 직역별부회의 소동물임상부회에 별도로 본건의 검토를 위한 개별위원회(동물진료보조전문직 검토위원회(가칭))를 조직하여 관계자간에 검토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3. 끝으로

사건이지만 금후

- (1) 동물진료에 있어 주치인 수의사의 직접 지도·감독하에 이루어 나가는 사육동물에 대한 정하여진 일정한 진료의 보조행위를 적법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에
- (2) 진료보조행위를 포함하여 동물진료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임상검사행위나 진료 유사행위를 업으로서 행하는 자들을 현 상황에서 동물의 '간호'에 종사하는자(동물간호사)의 개념(포괄적인)과는 구분하여 '동물진료보조전문직'으로서의 전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걸맞는 위치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와같은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자격제도의 창설은 바라볼 수 없다.

내부에서의 과제 제기만으로 해결하는데는 곤란이 따르겠으나 현재상황을 계속하여 시인 한다는 것은 그 치러야할 대가도 또한 클것으로 생각한다.  

